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 20061호, 2024.1.23. 공포, 2024. 7.24. 시행)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추진 절차, 지식재산권 귀속의 예외사유, 총한도액 국회 의결을 위한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서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의 세부 절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중 개발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혼합형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
- 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하는 경우
에 대한 내용을 신설(안 제32조의2)
-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기존 시행령 제33조 삭제, 안 제43조의2 신설)

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심의회역의 역할 등을 규정(안 제43조)

마.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사업으로”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
- 제32조제1항제2호 중 “것”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0조제2항각호의 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하나일 것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 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사업(이하 “수익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그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

- 나.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

업”)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중 구축비를 부담하고, 운영기간 중 국가기관등의 장이 임대료로 상환하는 사업

다.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사업(이하 “구매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부문(제21조 각호의 기관을 제외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

라. 그밖의 가 내지 다 목의 유형을 혼합한 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4.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협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등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국가기관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2.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제43조제1항 중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으로”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인정요청서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 및 제32조제1항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각 호”를 “각호”로, “통보하고,”를 “통보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시해야 한다”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 여부
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2에 따른 협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및 제6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절차) 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한다.

1. 민간제안형 :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하는 사업
2. 정부고시형 :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제43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사업에 한하여 법 제40조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제안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안서평가, 협상대상자지정, 협약체결 등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과 제출)

①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① 대상사업의 검토, 적격성 조사 등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	-----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	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			

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사업: 소프트
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호나목의 사업: 소프트
웨어의 개발·운영방식 및
비용·수익 분담 등에 관
한 사항

2. -----

수 있는 사업

3. 법 제40조제2항각호의 사업
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하
나일 것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사업(이하 “수익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투
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자(이하 ‘사
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비를 부담하고, 소프트웨
어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
로 그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

나.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사업시
행자가 사업비 중 구축비
를 부담하고, 운영기간 중
국가기관등의 장기 임대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신 설>

로 상환하는 사업

다.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사업(이하 “구매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부문(제21조 각호의 기관을 제외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

라. 그밖의 가 내지 다 목의 유형을 혼합한 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4.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의2(협약목적물의 지식재

산권 귀속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등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국가기관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2.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삭 제>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
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
토·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
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
업의 인정 절차) ① 국가기관등
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
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
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
업의 인정 절차) ①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한 인정요청서와 민간투
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 및
제32조제1항 각호-----

-----.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 여부
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2에 따른 협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 자료-----
----- 각호-----

통보하고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⑤ ----- 제4항-----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 제5항-----

제43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절차) 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

1. 민간제안형 :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하는 사업

2. 정부고시형 :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
시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제43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통해 인정
받은 사업에 한하여 법 제40조
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본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
호에 따른 민간제안형 소프트웨
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
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
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
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
호에 따른 사업의 최초 제안자
의 제안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
의 제안을 검토·평가할 경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
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신 설>

<신 설>

추진을 위한 제안서평가, 협상 대상자지정, 협약체결 등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

<신 설>

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과 제출) ①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① 대상사업의 검토, 적격성 조사 등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334